

추 가 약 정 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갑”)과 _____(“을”)는 20 년 월 일자 “납품대금 지급 업무 대행 계약서”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 ① 협력기업(“ 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서” 제2조 제1호 소정의 협력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갑”과 각 협력기업간의 약정 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갑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력기업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개별적으로 “갑”에게 대출을 신청한다.
- ② “갑”의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하기로 한다.
- ③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의 실행은 담보되는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이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대출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 ④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를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2020.5.29.까지는 150일 이내, 2021.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2조 협력기업에 적용할 대출조건 및 대출이자율

- ① 대출조건(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유무(해당 칸에 체크))

| | |
|----------|----------|
| 상환청구권 있음 | 상환청구권 없음 |
| | |

- ② 대출이자율

1. 대출이자율 : CD수익률 + 기간별 Spread 이상
2. “CD수익률” 은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간의 CD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하되, CD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리를 말한다.
3. 제1호의 「기간별 Spread」는 개별대출 실행시의 대출기간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운용하며 차주와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 개별대출의 대출기간 | 기간별 Spread |
|------------|------------|
| | % |
| | % |
| | % |
| | % |

- ③ 대출이자율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 ① “을”의 모든 협력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총 대출금액은 금_____억원정 범위내에서 운용하기로 한다. 단, 금액 증액시 별도 협의하기로 하며, 총대출금액은 감독규정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갑”의 “을”에 대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금융감독원 규정 기준)산정시, 협력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 시키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총대출금액은 “을”의 협력기업별로 분배하여 운용하기로 하며, 각 협력기업별 대출한도 분배 및 관리는 “갑”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을”이 협력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의 제한

- ① 협력기업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있거나 또는 전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갑”은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인터넷등 장애나 “갑”의 전산상 장애로 인하여 협력기업이 “갑”에게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기타 “갑”의 전산상 장애로 “갑”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한다.
- ③ “을”이 외상매출채권 결제일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등 “을”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이외의 대출제한 사항은 “갑”과 협력기업이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추가약정의 효력

- ①본 추가약정의 효력은 본 추가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추가 약정의 효력 만료 60일 전에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추가약정의 유효기간 중 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서의 효력이 종료되면 이 추가약정도 자동 종료된다.
- ②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변경, 급격한 금리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이 합의하에 추가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을)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주)한국씨티은행

CR-A-737 (2023.9.19) 심의필 2309-02-093

(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인)

(인)